

#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 特許拒絕査定

〈大法院 第2部 判決〉(1985. 7. 9)

事件番號 : 82후 16

裁判長 : 신 정 철 關與法官 : 정 태 균 · 이 정 우 · 김 형 기

1. 審判請求人(上告人) :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대표 : 차아드즈 에프헤이간)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 特許廳長
3. 原審決 : 特許廳 1982. 2. 27字, 1980年 抗告審判(當) 第1113號 審決
4. 主 文 :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

5. 理 由 1. 審判請求人 代理人的 上告理由 제1점을 判斷한다.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 政府間의 工業所有權 優先權相互 認定에 관한 各서(條約 제658호)와 舊特許法(1973. 12. 31. 法律 第2658號) 第4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特許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美合衆國 國民이 美合衆國에 特許出願을 한후 동일發明을 大韓民國에 特許出願하여 그 優先權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위 各서발효일인 78. 10. 30이후에 出願된 特許이어야 하고, 그 이전인 1974. 5. 3자로 出願된 此事件 發明特許에 대하여는 그 優先權 主張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가 주장하는 1957. 11. 7 발효된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우호통상 및 航海條約 第10條 第1項은 一방조약국의 國民과 會社는 타방 조약국의 영역내에서 特許權의 취득 및 보유, 商標, 營業用的 명칭, 營業용의 표호에 관한 權利와 모든 종류의 工業所有權에 關於하여 內國民대우와 外國民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른바 相互主義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일 뿐 우선권 주장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法文自體에 비추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判斷한 原審決은 正當하고 거기에 優先權主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理由없다.

2. 審判請求人 代理人的 上告理由 제2점을 判斷한다.

原審決 이유에 의하면, 原審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事件發明은 환의 메틸렌기를 가진 6-메틸렌 메트라 사이크린 化合物의 수소첨가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1973. 12. 13 日本 公開 特許公報에 특개소 48-97864號로 게재된 인용의 장과는 수소처리 첨가 반응시의 구조식이 상이 하기는 하나 위 兩發明은 그 製造方法에 있어서 균등물질로 하여 수소를 첨가 반응시키면 환의 메틸렌기를 가진 6-메틸렌 테트라 사이크린 化合物에 수소가 첨가된다는 기술사상과 수단이 동일하고, 그 구체적인 처리수단으로서 사용되 는 촉매가 동일 또는 균등물질이며, 반응온도와 가압조건도 동일범위내의 수치임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수소첨가 하는 반응수단은 극히 유사한 方法이므로 本원 發明은 인용發明의 기재 내용으로 부터 이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拒絕事實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正當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부 순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패소자의 負擔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判決한다. <㉞>